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4914-100002-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5.02

2025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고용노동부

Contents

01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① 청년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
(2)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3
(3) 청년도전지원사업	4
(4) 청년성장프로젝트	5
(5) 직장적응 지원	6
(6) 일학습병행	7
(7) 청년일경험지원	9
(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
(9) 해외취업지원	11
(10) 능력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문화 확산	14
(11)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15
(12)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6
(13)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17
(14)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9
(15)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20
(16)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21

② 고령자(신중년)

(1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2
(18) 고령자 고용지원금	23
(19) 중장년 경력지원제	24
(20) 중장년내일센터	25



(21)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29

(2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30

(23)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32

③ 장애인

(24) 장애인 고용장려금 33

(2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34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35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37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38

(29) 근로지원비용 지원 39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40

(31)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41

(3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42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43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44

(35) 장애인 인턴제 47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48

(37)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49

(38)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50

(39)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51

④ 여성(육아지원)

(40) 출산 육아 지원 52

(4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57

(42)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59

(4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60

Contents

(44) 직장어린이집 지원	61
(45)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63
(46)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	64

02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

(47) 고용허가제도	66
(4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68
(49)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70
(50)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72
(51)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73
(52)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74
(53)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75

03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54) 고용복지*센터	78
(55)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81
(56)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82
(57)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84
(58)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85
(59) 국민취업지원제도	87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1 고용장려금

(60) 고용촉진장려금 90

2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61) 고용유지지원금 92

(62) 고용안정장려금(총괄) 94

(6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96

(6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98

(65)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00

(6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04

3 사회적기업

(67) 사회적기업 육성 106

4 지역고용

(6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09

(69)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110

(70) 지역일자리 공시제 111

(71) 고용위기지역 지정 112

(7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14

(73)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116

5 기타

(74) 고용영향평가제도 117

(75) 고용형태공시제도 118

(76) 고용노동통계조사 120

(77) 인력수급전망 122

Contents

05 ▶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78) 고용보험제도	124
(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126
(80) 구직급여·연장급여	127
(81) 취업촉진수당	129
(8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130
(83) 자영업자 고용보험	132
(84) 실업크레딧 지원	134
(8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135
(86)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136

06 ▶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 개인

(87) 국민내일배움카드	140
(88)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41
(89) 돌봄서비스 훈련	142
(90) 일반고 특화훈련	143
(91)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 144	
(9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145
(93)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146
(94)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147



② 기업

(9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49
(9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151
(97)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153

③ 기타

(98) 폴리텍 소규모사업장훈련	154
(99)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155
(100) 산업별역량체계(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157
(101)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59
(102)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161
(10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162
(10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64
(105) 숙련기술 장려	165
(106) 직무능력은행제	167
(107)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169

07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① 노사관계

(108) 근로시간 면제제도	172
(109)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174
(110) 노동쟁의 조정	176
(111) 노사협의회	179
(112) 부당노동행위	180
(11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182

Contents

㉔ 노사협력

- (114)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184
- (115)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185
- (116)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188
- (117) 근로자 이음센터 189
- (118)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190

08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① 근로조건 개선

- (119)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192
- (120)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지원 194
- (121)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도 195
- (1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98
- (12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200

㉔ 차별개선

- (124) 근로자 파견제도 201
- (12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205
- (126)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208
- (127)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209
- (128)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210



09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① 임금보장

(129)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	212
(130) 최저임금제도	213
(13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15
(132) 대지급금제도	217
(133)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219
(13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220
(135)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221
(136) 무료법률구조지원	223

②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137) 퇴직연금제도	225
(138)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228
(13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229
(140)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230
(141) 근로복지기금 지원	231
(142) 우리사주제도	233
(143)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235
(144) 생활안정자금(용자)	237
(145) 생활안정자금(용자)(이차보전)	239
(146)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240
(147)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241
(148) 근로자 문화예술제	243

Contents

10 산업재해 예방지원

(149) 업종별 재해예방	246
(150)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248
(151) 유해작업환경 개선	250
(152) 근로자 건강보호	251
(153) 산재예방시설 용자	253
(154)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254
(155)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260
(156)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262
(157)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263
(158)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원	264
(159)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65
(16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67
(161)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268

11 산재근로자 지원

(162) 산재보험제도	270
(163) 산재보험급여	272
(164)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74
(16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75
(166)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276
(167)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277
(16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278



(169)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279
(170) 진폐위로금 지급 280

12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82

1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288

찾아보기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고용서비스 지원(채용·상담·정보제공)

- (3) 청년도전지원사업 / 4
- (10) 능력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문화 확산 / 14
- (12)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16
- (42)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59
- (47) 고용허가제도 / 66
- (4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 68
- (52)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74
- (54) 고용복지*센터 / 78
- (56)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82
- (166)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 276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2
- (12)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16
- (1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2
- (18) 고령자 고용지원금 / 23
- (23)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32
- (24) 장애인 고용장려금 / 33
- (2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34
-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35
-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37

찾아보기

-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38
- (29) 근로지원비용 지원 / 39
-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40
- (31)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 41
- (3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 42
- (35) 장애인 인턴제 / 47
- (37)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49
- (38)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50
- (4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57
- (44) 직장어린이집 지원 / 61
- (60) 고용촉진장려금 / 90
- (61) 고용유지지원금 / 92
- (62) 고용안정장려금(총괄) / 94
- (6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96
- (6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98
- (65)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00
- (6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104
- (67) 사회적기업 육성 / 106
- (6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109
- (69)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110
- (73)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116
- (8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 130
- (86)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 136
- (115)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 185
- (119)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192
- (13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220

찾아보기

- (140)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 230
- (141) 근로복지기금 지원 / 231
- (142) 우리사주제도 / 233
- (143)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235
- (153) 산재예방시설 용자 / 253
- (154)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254
- (155)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260
- (16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275

직업능력개발 지원

- (6) 일학습병행 / 7
- (9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149
- (9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151
- (97)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 153
- (106) 직무능력은행제 / 167



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고용서비스 지원(상담·정보제공)

- (4) 청년성장프로젝트 / 5
- (45)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63
- (4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 68
- (49)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 70
- (50)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 72

찾아보기

- (51)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 73
- (52)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74
- (54) 고용복지*센터 / 78
- (98) 폴리텍 소규모사업장훈련 / 154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38
-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40
- (40) 출산 육아 지원 / 52
- (4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60
- (8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사업) 사업 / 130
- (86)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 136
- (133)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 219
- (135)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221
- (136) 무료법률구조지원 / 223
- (143)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235
- (144) 생활안정자금(융자) / 237
- (146)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40
- (147)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 241
- (148) 근로자 문화예술제 / 243
- (157)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 263
- (158)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원 / 264
- (163) 산재보험급여 / 272
- (16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278
- (169)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 279

찾아보기

직업능력개발 지원

- (2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30
- (87) 국민내일배움카드 / 140
- (93)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146
- (97)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 153
- (105) 숙련기술 장려 / 165
- (106) 직무능력은행제 / 167
- (107)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 169



취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

고용서비스 지원(진로지도·직장체험·상담·정보제공)

- (2)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 3
- (3) 청년도전지원사업 / 4
- (7) 청년일경험지원 / 9
- (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10
- (9) 해외취업지원 / 11
- (13)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 17
- (14)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19
- (15)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 20
- (20) 중장년내일센터 / 25
- (21) 폴리텍 신증년 특화과정 / 29
-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48
- (39)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 51

찾아보기

- (42)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59
- (46)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 / 64
- (54) 고용복지+센터 / 78
- (55)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81
- (56)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82
- (57)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84
- (58)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85
- (59) 국민취업지원제도 / 87
- (67) 사회적기업 육성 / 106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80) 구직급여·연장급여 / 127
- (81) 취업촉진수당 / 129
- (83) 자영업자 고용보험 / 132
- (84) 실업크레딧 지원 / 134
- (8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135
- (146)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40

직업능력개발 지원

- (6) 일학습병행 / 7
- (16)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 21
- (2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30
-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43
-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44
- (87) 국민내일배움카드 / 140

찾아보기

- (89) 돌봄서비스 훈련 / 142
- (90) 일반고 특화훈련 / 143
- (91)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 144
- (9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145
- (93)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146
- (101)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159
- (10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 162
- (10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64
- (106) 직무능력은행제 / 167
- (164)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274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고용서비스

- (40) 출산 육아 지원 / 52
- (53)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 75
- (75) 고용형태공시제도 / 118
- (76) 고용노동통계조사 / 120
- (78) 고용보험제도 / 124
- (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126
- (99)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155

근로 및 노사 관계

- (108) 근로시간 면제제도 / 172
- (109)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174

찾아보기

- (110) 노동쟁의 조정 / 176
- (111) 노사협의회 / 179
- (112) 부당노동행위 / 180
- (11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182
- (116)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 188
- (117) 근로자 이음센터 / 189
- (118)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190
- (120)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지원 / 194
- (121)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도 / 195
- (1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198
- (12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 200
- (124) 근로자 파견제도 / 201
- (12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205
- (126)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 208
- (127)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 209
- (128)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 210
- (129)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 / 212
- (130) 최저임금제도 / 213
- (13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15
- (132) 대지급금제도 / 217
- (137) 퇴직연금제도 / 225
- (138)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 228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 (149) 업종별 재해예방 / 246
- (150)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248

찾아보기

- (151) 유해작업환경 개선 / 250
- (152) 근로자 건강보호 / 251
- (156)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262
- (159)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65
- (16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267
- (161)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 268
- (162) 산재보험제도 / 270
- (167)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 277
- (170) 진폐위로금 지급 / 280

기 타

- (6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109
- (70) 지역일자리 공시제 / 111
- (71) 고용위기지역 지정 / 112
- (7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114
- (74) 고용영향평가제도 / 117
- (77) 인력수급전망 / 122
- (100) 산업별역량체계 / 157
- (102)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 161
- (114)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 184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통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관련 홈페이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사업 목적

-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은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 (유형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유형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4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유형2)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할 청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유형1)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자가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 (지원절차)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2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99),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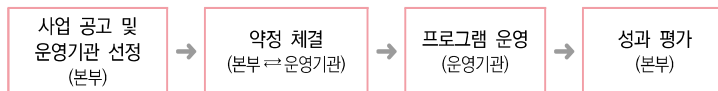
사업 목적

- 산업계와 협업하여 구직 청년의 취업지원 및 재직 청년의 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고용 순 주기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15세~34세 청년
- (지원내용)
 - ① (구직청년: 취업지원) 산업특화 실무중심의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구인기업 매칭 등 취업까지 연계
 - ② (재직청년: 성장지원)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대상 맞춤형 OJT, 멘토링, 경력설계를 지원 → 산업 내 성장 지원
- (지원규모) 5개 내외 운영기관*
 - * 산업별 협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산업단지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사업주단체 (산업 특정) 등 산업계 관련 기관
- (지원내용)
 - 운영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추진체계



3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714, 7494), 고용24(www.work24.go.kr)

사업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 *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사업내용

- ①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 ②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③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 *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규모) 12,000명
-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참여수당, 인센티브 지원 등

구 분	단기 (5주 이상)	중기 (15주 이상)	장기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150만원(50만원×3회)	250만원(50만원×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없음	없음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4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715, 7450), 고용24(www.work24.go.kr)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사업내용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 운영을 통해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유지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홍보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지원규모) 50,000명

5 직장적응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716, 7437),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등의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입직 초기 청년의 직장적응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채용 1년 이내*인 신입직원(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 지역 내 산업, 기업 및 일자리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 조정 가능
 -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제공
 - * (예)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교육* 제공
 - * (예)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 (지원규모) 7,600명

6 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일학습병행 홈페이지(www.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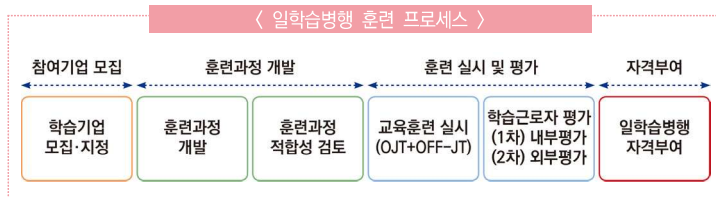
사업목적

-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사업내용

- (선정 대상)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 (학습근로자 조건) 1년 이내 신규 입사자, 청년구직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 (지원내용) ▲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 현장(외)훈련 훈련비, ▲ 훈련장려금, ▲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양성교육 지원
- (자격 부여) 훈련 수료 후, 훈련성과 평가 →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사업추진체계



▶ 참여 유형

	대상 및 유형	주요 내용	
재직자	단독기업형 (50인 이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	
	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대학 등)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	
재학생	고교용 (특성학교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학교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NCS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모델
	전문대용 (전문대 2학년)	전문대유형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모델
	대학교용 (4년제 4학년)	4년제유형	4년제 대학교 최종학년을 기업의 근로자로 선채용하여 훈련(Off-JT, OJT)을 지원하는 훈련모델
	첨단산업 아카데미		전문대, 4년제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첨단산업 분야 선채용 훈련모델
後학습	P-TECH*(재직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경력개발 고도화(시범)	P-TECH 이후 4년제 편입 또는 전문대 전공심화 등과 연계하여 상위자격(L5이상)으로 성장 경로 제공	
	고숙련 마이스터 (기업현장교사 대상, 시범)	학습기업의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석사학위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고급 수준(L6) 훈련과정	

* P-TECH: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주요 특징

-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 운영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주도로 개발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교육훈련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교육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평가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학력 중심이 아님) → 자격의 통용성 확보

7 청년일경험지원

일경험 상담센터(☎ 1811-8447), 일경험 포털(www.y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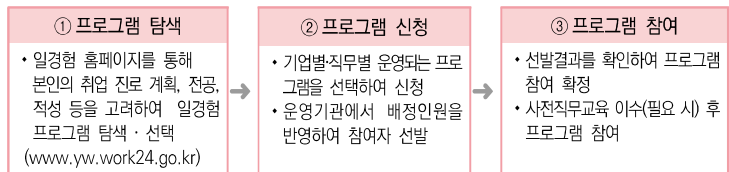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① (인턴형)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 ②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 ③ (ESG지원형)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 ④ (기업탐방형)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5일 내외)

■ 사업추진체계



8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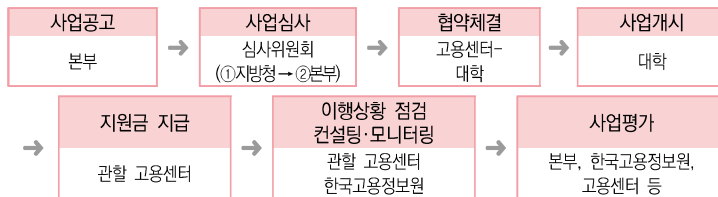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기능을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한 청년 친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의 취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 고용서비스 제공 대상: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2년 이내), 지역청년
- (사업방식)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과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 * 거점형: 7억(정부 4억, 보조율 57%), 일반형: 3억(정부 2억, 보조율 66.7%)
 - * 거점형: 지역산업 수요, 대학 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역청년 위주)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사업추진체계



■ 추진현황

- 전국 121개교('24년 기준, '25년 사업 규모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25년 사업예산 364억)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홈페이지 참조

9 해외취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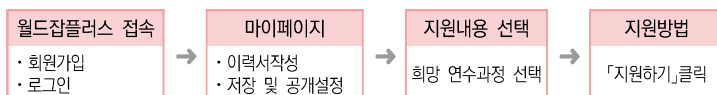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K-Move 스쿨), 해외취업 정보제공, 취업알선, 일경험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 사업내용

K-Move스쿨

- (목적) 양질의 해외일 자리를 발굴하고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 + 직무 교육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25년 2,700명
 - **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 모집 가능, 군 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
- (지원내용)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연수비 1,300만원(운영기관) 및 참여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수장려금 및 숙박비 지급
 - * (지원금) 트랙 I 800만원, 트랙 II 1,350만원, 패스트트랙 390만원 지원 등
 - * (장려금/숙박비) 동일 지역 월 10만원, 타 지역 월 20만원 / 타지역 월 20만원
- 사업추진체계
 - ①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로 온라인 신청



- ② 선발방법: 연수과정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 (목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 취업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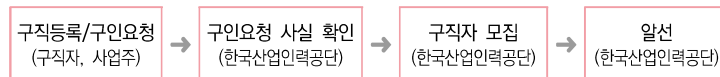
- (지원내용)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해외 일경험

- (목적)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90.1.1. 이후 출생자) 미취업자로 해외 일경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25년 600명 **군 경력은 최대 5년까지 인정, 최대 만 39세 이하
- (주요내용) 사전교육(25시간 이상), 현지 일경험(2~4개월), 사후관리(12개월)로 이루어진 다양한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참여청년 대상 국가별 지원금(50~300만원) 및 체재비(월 150만원, 최대 4개월), 운영기관 대상 사업운영비(최대 300만 원) 지급

해외취업알선

- (목적)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 및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기업간의 알선 지원
- (지원대상)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한국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해외 구인기업 등
- (지원내용)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 사업추진체계



국내 해외취업센터

- (주요내용)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상시채용관 운영 (면접 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지원
- (이용방법)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예약 가능
*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출구)
*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시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루즈 빌딩 6층(시청역 1번출구)

해외 K-Move 센터

- (주요내용) 해외 코트라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등
- (현황) 일본(도쿄, 오사카, 나고야), 미국(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중국(베이징), 캐나다(밴쿠버), 호주(시드니), 유럽(프랑크푸르트), 중남미(멕시코시티, 중동(두바이), 싱가포르 등 28개소
- (이용방법)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Move센터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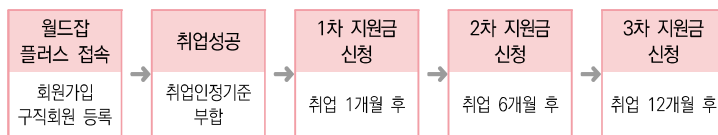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목적)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 ① 만 34세 이하(군 경력 최대 5년까지 인정 가능, 최대 만 39세 이하)
 - ②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8분위 이하 가구원, ③ 월드잡플러스 회원 ④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취업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

(단위: 만원)

계	취업 1개월 후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6개월 후 (2차 지원금 신청)	취업 12개월 후 (3차 지원금 신청)
500	250	100	150

• 사업추진체계



10 ▶ 능력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문화 확산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7493)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활용부(☎ 052-714-8858)
관련 홈페이지: NCS 종합포털(www.ncs.go.kr)-공정채용

■ 사업 목적

-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채용시스템을 확립하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채용문화 확산

■ 사업 내용

- 공정채용제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용관리시스템 등 지원
 - 채용담당자(CEO, 인사담당자 등) 대상 능력중심 공정채용 교육, 면접관 양성·교육 및 지원 등
- 기업들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안내하는 「공감채용 가이드북」 제작·보급
- 공공·민간의 공정채용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홍보하는 “공정채용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
-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채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관리 솔루션(ATS) 도입 지원
 - * ATS: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 (지원대상) ATS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요건 : 사업 신청일 전 12개월 이내 ①고용24(워크넷 포함) 알선 서비스 및 ②플랫폼 사의 ATS 유료 서비스를 사용한 이력이 없고, ③신청일 현재 고용24에 가입된 사업주
 - * 우선선정 : 공정채용 컨설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등
 - (지원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검증된 ATS 서비스를 도입·활용한 이용 기업에 사용료 지원 및 고용서비스 연계 지원

11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3)

■ 목적

-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 채용단계별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채용광고 및 지원서 접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 금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금지 *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채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역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 고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채용 확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여부의 고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 고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외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서류 보관·반환 청구·반환 소비용 부담·파기 관련 사실 등을 채용여부 확정 전 구직자에게 고지,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반환

12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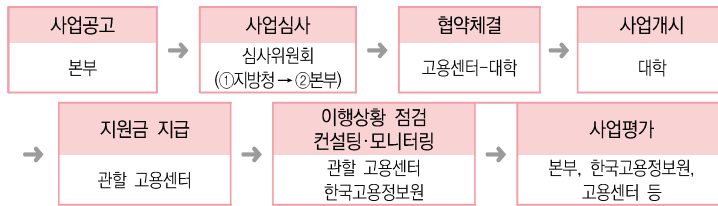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사업방식) 대학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 (지원내용)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 * (빌드업 프로젝트) 1:1 상담을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고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수립 및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대학 저학년 중심)
 - * (점프업 프로젝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 연계·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1년간 사후관리 및 참여수당 제공 (대학 고학년 중심)

■ 사업추진체계



■ 추진현황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5년 60개교(변동 가능)운영 지원('25년 사업 예산 463억원)

13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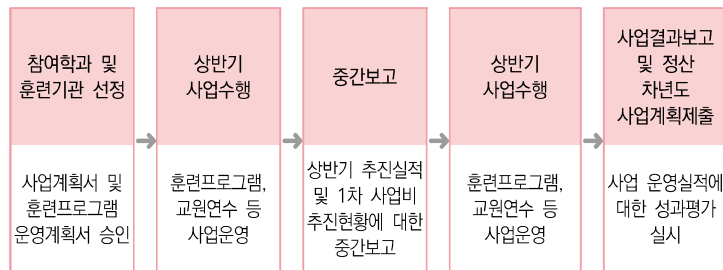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승인을 받은 학과 또는 신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과
- (지원내용) 신기술·신산업분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 직업계고 학과 신입생을 재학 3년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간기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1~3학년)으로 지원
 - * 학과당 8천만원 내외, 연차별 신규 학년이 추가되는 경우, 연계 훈련기관의 훈련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1개 학년 당 훈련비 5천만원, 운영비 400만원 추가 지원)
 -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 훈련프로그램(연 100시간 이상) 지원
 - 디지털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디지털 훈련과정 의무 이수
 - 교사의 신기술분야 전문성 및 교수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등
- (훈련방식) 1~3년차 단계적 지원
 - (1년차) 신기술 기초지식 및 실습 위주 훈련(디지털기초훈련 의무 편성)
 - (2년차) 신기술 전문지식 훈련 및 관심 제고(특강, 멘토링, 경진대회 등)
 - (3년차)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산업계 수요 반영)

■ 사업 추진 절차



* 전담 운영지원 기관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및 학과 컨설팅 수시 진행

14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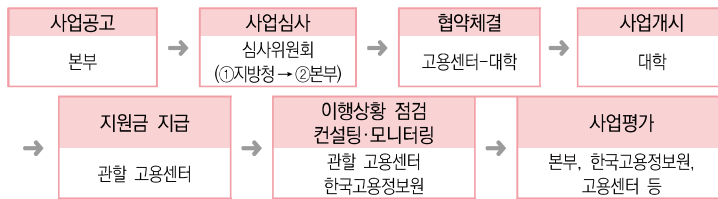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 제고 및 구직 단념·고립 전환 사전 방지를 위해 고교 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학교 재학생
 -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1~3학년), 일반고 비진학 청년(2~3학년) 등
- (지원내용) 고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로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제공
 - * ① 시가반 직업·진로탐색 지원 ② 개인 맞춤형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 ③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진로·직업체험 기회 제공 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⑥ 장기성장로드맵 마련 등
- (운영 기관) 대학(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개교

■ 사업추진체계



■ 추진현황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5년 30개교(변동 가능)운영 지원('25년 사업 예산 91억원)

15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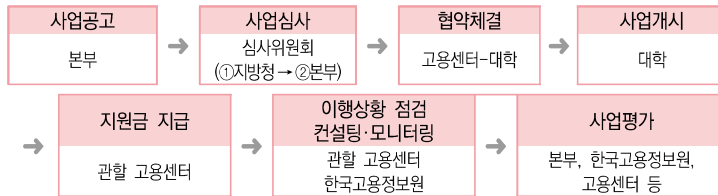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졸업생 등 청년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위주로 졸업유예자·예정자 등
- (지원내용) 교육부의 학생정보 연계를 통해 미취업자를 발굴, 수요자(청년·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직자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운영 기관) 대학(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교

■ 사업추진체계



■ 추진현황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25년 120개교 운영 지원('25년 사업 예산 175억원)

16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한국폴리텍대학(☎032-650-6780),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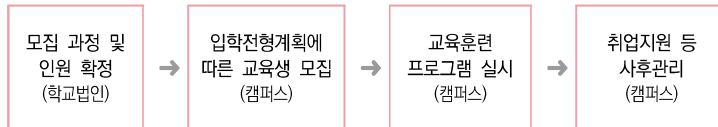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심화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스매치, 청년 실업에 대응
 -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 등 일정 수준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유망 직종을 선정하여 고수준 직업훈련과정 운영

■ 사업내용

- 운영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대상: 만 39세 이하의 취업희망자 중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2,430명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일 및 유사계열 2년 실무종사자 가능
- 훈련특징: 산업 현장성 높은 시설·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자기주도형 실습교육(NCS 레벨 3~5, 전문대이상) 실시
- 훈련과정: 데이터융합SW, IoT정보보안, 생명의료정보, 스마트자동차, VR·메타버스콘텐츠 등 109개 과정(25년)
- 수료요건: 총 훈련 일수의 80% 이상 이수

■ 사업추진체계



17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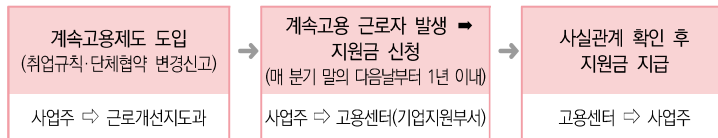
■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 사업 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 지원요건:
 -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 지원절차



18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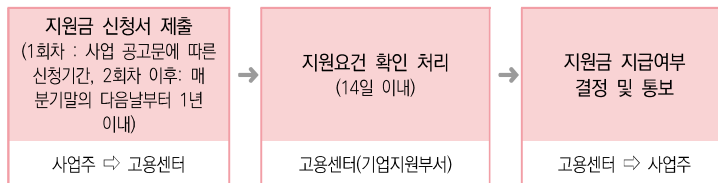
목적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요건: 고용보험성립일 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 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지원절차



19 ▶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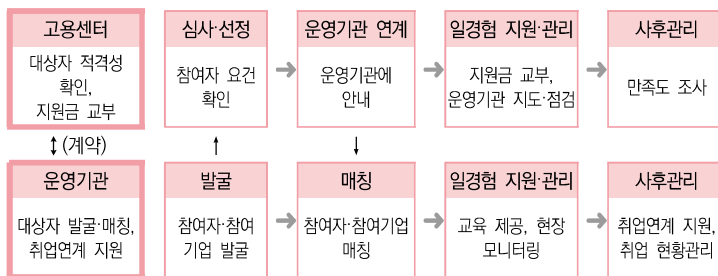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참여자) ①중장년내일센터 및 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②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단,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5인 이상 기업도 가능
 - (지원내용) ①참여자: 참여수당 월 150만원, ②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참여자 1인당 월 40만원
- (프로그램)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 *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 **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 사업추진체계



20 중장년내일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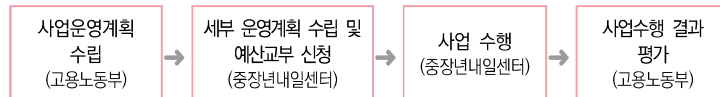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운영기관: 전국 35개소(민간센터 23개소, 노사발전재단 12개소)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 ▶ 중장년 지원
 - (생애경력설계)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가치관 분석 등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등
 - * 「기초, 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 → 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 → 일자리, 직무교육, 훈련 연계 →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스쿨 프로그램) 퇴직(예정)자의 실직 불안감 해소 및 전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여 새로운 진로 탐색 및 원활한 이·전직 지원
 - (재도약 프로그램)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직 역량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산업별 특화서비스) 지역별 주요 산업을 반영하여 산업군별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직업정보 제공, 직무교육, 동행면접 등 해당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중장년센터 내 '청춘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인문·여가·문화 등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독서·글쓰기 등 자기계발, 여가문화, 정체성 탐색·자존감 회복·심리 치유·관계 개선·인생 설계·직종별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강연, 체험, 탐방, 세미나, 문체부 협업)

▶ 사업주 지원

- (사업주 지원 패키지) 중장년층 고용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①고령자 계속고용·신규채용 컨설팅(지원금 연계), ②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훈련, ③‘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체계



중장년내일센터 운영현황 (전국 35개소, '24.1월 기준)

• 민간센터 23개소

운영기관명	소재지	대표 연락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3층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04-7340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6층(에프케이아이타워)	02-2055-4259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76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49, 2층(기능동,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37-2719
고양상공회의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A동 4층 (장항동, 리퍼스타)	031-901-9197
파주상공회의소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8층 (금촌동,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71-4245
안산상공회의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0 안산상공회의소 A동 3층(고잔동)	031-410-3031
평택상공회의소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2층 (이충동,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646-1046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 2층(강릉고용센터)	033-610-1929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12층 (양정동, 양정타임스퀘어)	051-647-0453
울산상산경영자총협회	울산 남구 대학로 60, A동 3층 (무가동)	052-277-9491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28번길 6, 센트럴빌딩 5층	055-266-8317
한국커리어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1길 6-1, 보배빌딩 2층	055-632-2254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9, 1층(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489
경북경영자총협회경북동부*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1(상도동), 대운개발빌딩 3층	054-727-2020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 구미시 백산로118, 3층(송정동,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4-461-5519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북부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1, 대운개발빌딩 3층	054-727-2020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 북구 금남로 121, 1층 (북동,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609-8964
목포상공회의소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2층 (상동,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280-0556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 순천시 우석로 7, 2층 (덕월동,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061-741-0096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6층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042-253-7051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6번길 7(송정동), 직지스마트타워 908호	043-270-7500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5층	041-559-5766

* 민간센터 중 청춘문화공간 운영기관(5개소)

• 노사발전재단 12개소

운영기관명	소재지	대표 연락처
중장년내일센터(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5, 3~4층 (준타워)	02-6350-1500
중장년내일센터(서울 서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층(BYC하이시티빌딩)	02-3488-1900
중장년내일센터(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3층	032-421-8301
중장년내일센터(경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3층 (권선동, 인동빌딩)	031-8014-8500
중장년내일센터(강원)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8, KT링커스빌딩 2층(단구동)	033-735-0971
중장년내일센터(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11층(흥국생명빌딩)	051-860-1300
중장년내일센터(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44, 2층 (삼산동,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052-289-8975
중장년내일센터(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7M층(동인동2가)	053-550-3000
중장년내일센터(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4층 (누문동, 교보빌딩)	062-531-5712
중장년내일센터(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BYC빌딩 5층(효자동2가)	063-222-1600
중장년내일센터(충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15층 (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대전회관)	042-489-3820
중장년내일센터(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3층(이도1동,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2-4060

* 노사발전재단센터는 12개소 모두 청춘문화공간 운영

21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한국폴리텍대학(☎032-650-6780),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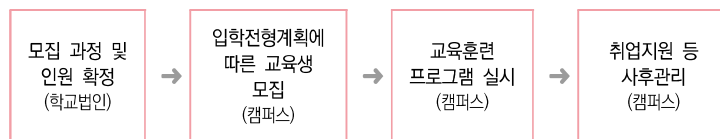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급감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직업훈련 역할 필요
 - 신중년 특화교육을 제공하여 40~60세대의 전직, 창업, 안정된 노후 준비에 기여

■ 사업내용

- 운영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대상: 만 40세 이상의 미취업자·영세자영업자 7,500명
- 훈련기간: 6개월(6월·12월 모집) 및 단기 모듈식(상시모집)
 - ※ 훈련 수요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 훈련과정: 자율주행자동차, 전기공사 등 신중년 특화 직종 운영('25년)
 - ※ (6개월) 17개 캠퍼스 32개 과정 1,350명, (단기 모듈식) 6,150명
- 수료요건: 총 훈련 일수의 80% 이상 이수

■ 사업추진체계



2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사업목적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참여자 연령·취업여부·중사 업종 등에 따른 생애 과업 이해·직업역량·가치관 분석 등을 통해 미래 경력 대안 탐색 등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사업내용

- 운영기관: 전국 35개 중장년내일센터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미래 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미래 경력 탐색·재설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기초, 심층상담으로 경력 진단 → 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 → 일자리, 직무교육, 훈련 연계 → 사후관리」 등 중장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재직자	연령대	3h	3h	3h	3h	2~3h
	40대 경력전성	경력관리	변화관리	평판 및 네트워킹 관리	성과관리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50대 경력확장	나이스에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60대 경력공유	능동적인 인생을 위한 숨고르기	삶의 가치 발견하기	삶의 균형 잡기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뛰어들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구직자		1.5~5h	1.5~6h	1.5~3h	1.5~6h	2~3h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 2인생 계획하기	제 2인생 실행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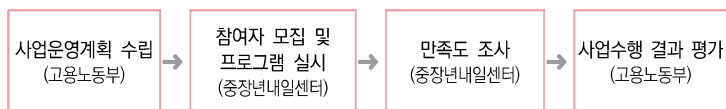
※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집단으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등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온라인 교육

- 온라인으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및 전직스쿨 프로그램 수강 가능

* www.elifeplan.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 사업추진체계



23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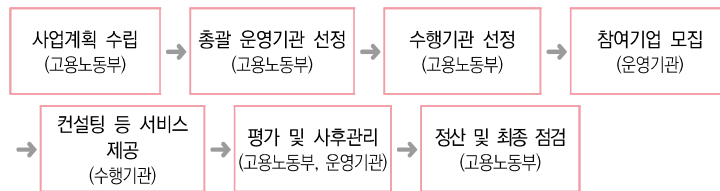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주(300인 이상 기업)
- 지원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컨설팅 지원
 - 기업 인사 담당자 등에 대한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제공
 - 업종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추진체계



24 장애인 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8%)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 장려금 지급 단가 〉

구 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2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사업추진체계



2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 (지원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	구분	지급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2022년 발생분 까지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2025년 연내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및 사업 종료

■ 사업추진체계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0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별도 모집)
 - 민간기업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1회, 최대 5천만원)

■ 사업추진체계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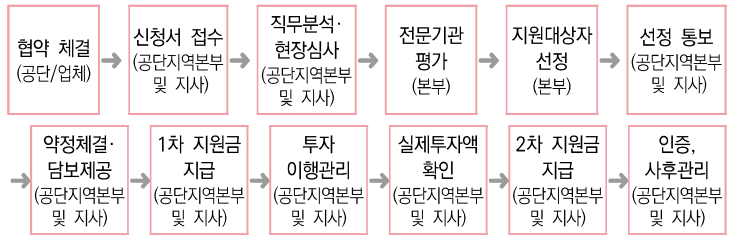
사업목적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0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별도 모집)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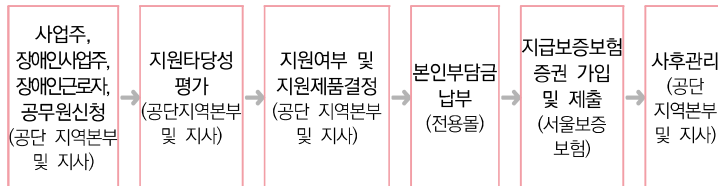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한도
 -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함

구분	지원금액
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이하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초과	· 130만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130만원)×9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자부담 면제

- 지원조건: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사업추진체계



29 근로지원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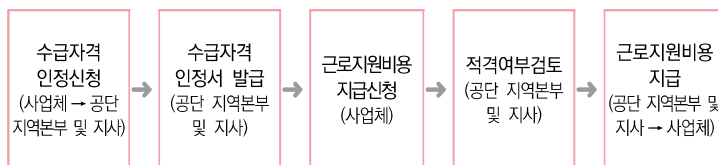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응지도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적응지원 및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직무전환 또는 배치전환 후 90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
- (지원내용)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추진체계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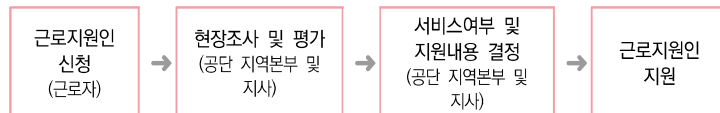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시간당 10,030원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2,036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 사업추진체계



31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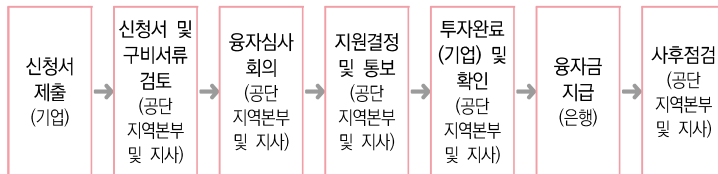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동안 이자차액 보전
 -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3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을 줄여주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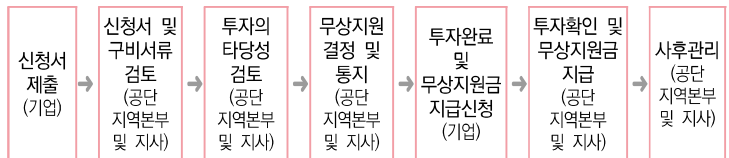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용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근로자 10명-20명 미만 시 2천만원 한도 * 20명 이상 시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 사업추진체계



33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 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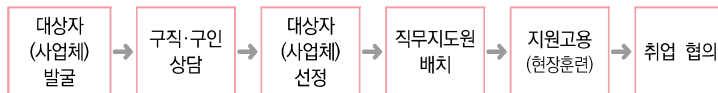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구 분		지원 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8,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 실시

■ 사업추진체계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원(6), 훈련센터(맞춤2, 디지털10, 발달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수당 지급 (※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¹⁾
 - 맞춤훈련센터²⁾ 및 디지털훈련센터³⁾
 - 발달장애인훈련센터⁴⁾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에 따라 지원

구 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취성패 참여자 월 28.4만원)	
	훈련장려금	교 통 비	월 5만원
		식 비	월 6.6만원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10만원 한도)	

1) 직업능력개발원 : 경기남부,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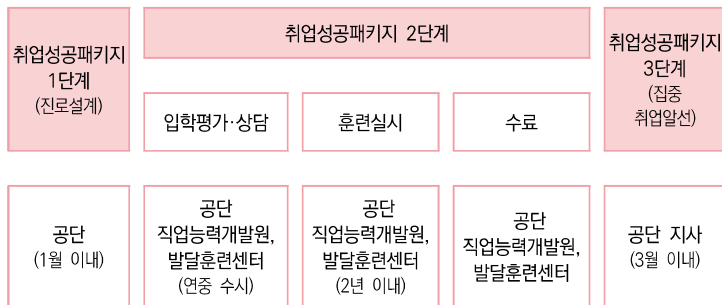
2) 맞춤훈련센터 : 서울, 제주

3) 디지털훈련센터: 구로, 판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천안아산, 전주, 창원

4) 발달장애인훈련센터 : 서울, 서울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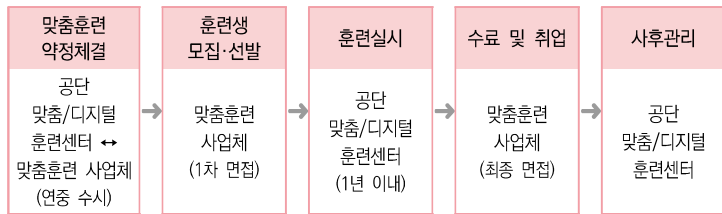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훈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장애인훈련생 선택사항임

- 맞춤형/디지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형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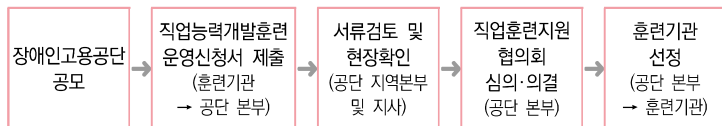


* 디지털훈련센터: IT 수준별 훈련과정과 기업 맞춤형훈련 연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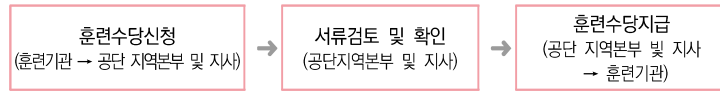
↳ (IT수준별 훈련) 훈련생 역량 수준별 IT 정규 훈련과정

(기업 맞춤형훈련)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맞게 훈련과정의 탄력적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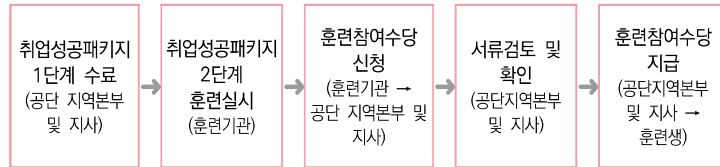
- 공공·민간훈련기관 위탁 훈련
 - 훈련기관 선정(민간훈련기관)



- 훈련수당 지급(공공훈련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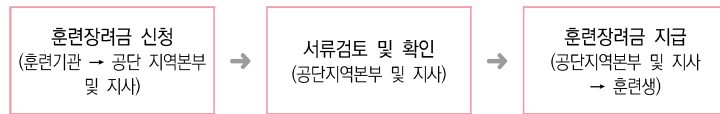


- 훈련참여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장애인훈련생 선택사항임

- 훈련장려금 지급(민간훈련기관)



35 장애인 인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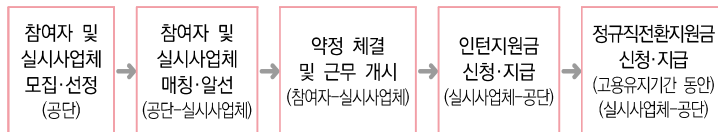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중점지원대상**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8개 장애유형
 -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지원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 (지원내용)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지원(최대한도 월10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추가 지원(최대한도 80만원, 최대 6개월)
 - * 최초 3개월분은 3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 가능, 이후 매월 또는 일괄 지급 (3개월 고용 미유지 시 미지급)

사업추진체계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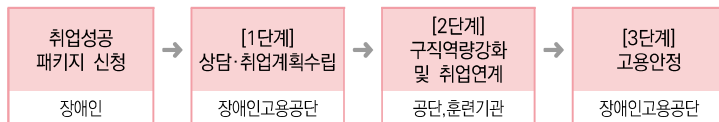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지원내용)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집중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원(1단계 필수) 지급
2단계 (구직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코칭프로그램 2회 이상 이수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추가) 기타 훈련과정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지급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3단계 (고용 안정)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 장애인	[저소득층] 구직활동 계획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저소득층] 구직활동 중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100만원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 사업추진체계(절차)



37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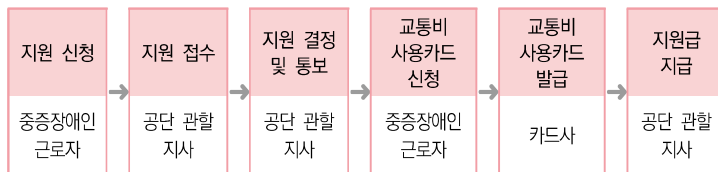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1유형)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2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 시 정산 후 계좌로 지급
 - * (U&우리카드) 후불교통기능 기반 체크카드(우리은행 지점, APP, 홈페이지 등 신청)
(우체국 동행체크카드) 선불충전형 체크카드(우체국 지점 방문발급)

■ 사업추진체계



38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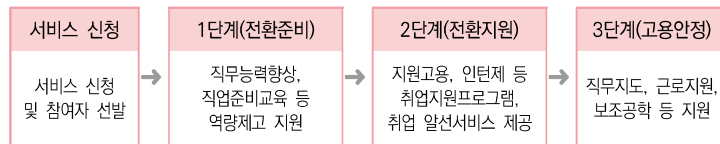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전환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최대 월 90만원, 3년간 지원) 지급

■ 사업추진체계



39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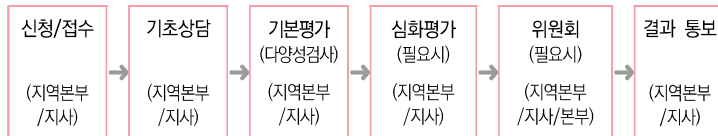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직업능력 및 작업환경 요구에 따라 고용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고용서비스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천 및 필요한 고용서비스* 제공
 - * (고용서비스)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출퇴근 비용지원, 현장평가, 직업훈련
 - ** (전문기관 연계) 심리지원 프로그램

■ 사업추진체계



40 ▶ 출산 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 도모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 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 한 여성 근로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25.2.23.부터 제도확대)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최초 60일 (다태아 75일)</th> <th>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th> </tr> </thead> <tbody> <tr> <td>우선 지원 대상 기업</td> <td>·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월 210만원)과의 차액 지급</td> <td>정부가 급여 (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td> </tr> <tr> <td>대규모 기업</td> <td>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td> <td>정부가 급여 (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td> </tr> </tbody> </table>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일 추가 지원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월 210만원)과의 차액 지급	정부가 급여 (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급여 (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월 210만원)과의 차액 지급	정부가 급여 (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급여 (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고용센터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지급기간: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일, 출산에 한해 다태아 119일)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 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최대 99일 지원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일 것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것 ③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지급 ○ 지급기간: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급액: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한액: 월 210만원 - 하한액: (예술인)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 100일 지원	①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② 지급기간에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25.2.23.부터 제도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기간 연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5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허용해야 함 *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될 경우 (‘25.2.23.부터 제도확대)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 2배 가산 시)으로 확대	〈허용 예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25.2.23.부터 제도확대) 휴가 절차가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휴가 기간이 20일(유급)로 확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개시)하는 근로자 (‘25.2.23.부터 제도확대) 휴가 사용 기한이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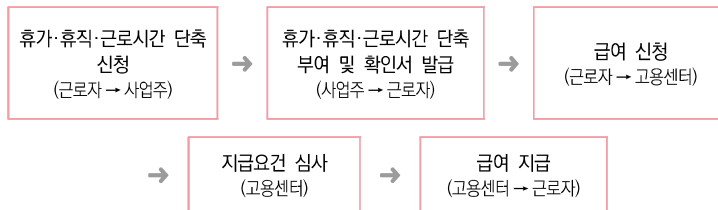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상한액 401,91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5일에 대한 통상 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401,910원)과의 차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25.2.23.부터 제도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기간이 최초 5일에서 20일로 확대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 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난임 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1일 유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25.2.23.부터 제도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연간 3일 →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	난임치료(예정) 근로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25.2.23. 신설)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 지원(상한액 160,76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160,76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4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사업목적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시 월 200만원 지원(첫3개월)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파견사용 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의 시작 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 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근로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 근로의 대가에 80% 한도로 지원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업무분담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 ②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매월 업무 분담수당 등 금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지원금액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합산 분담수당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42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인재채움뱅크 홈페이지(<http://www.matchingbank.career.co.kr>),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출산·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유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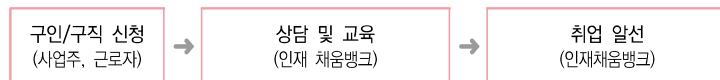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기업 및 구직자
 - (지원내용) 기업에는 맞춤 인재를 추천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육아의 병행 등을 위해 기간제, 단시간 일자리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적합한 대체인력 일자리를 알선
 - (기업) 대체직무에 적합한 구직자 알선 및 사후관리서비스
 - (구직자)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재취업 알선 등
- * 인재채움뱅크 홈페이지: <https://matchingbank.career.co.kr/>

〈 대체인력 채용 관련 장려금 지원제도 〉

종 류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12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163)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참조

■ 사업추진체계



4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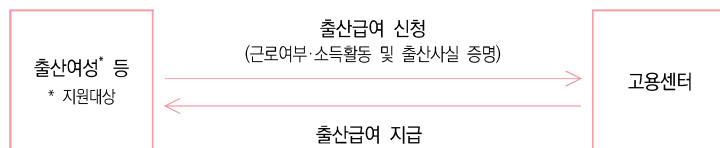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지원내용) 총 150만원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44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411-29, 대전 ☎ 042-870-9111-7, 부산 ☎ 051-320-8182-8)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escac/>)

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함

사업내용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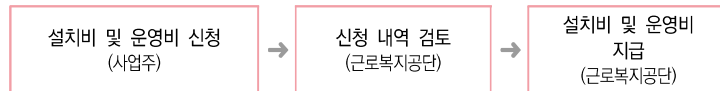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공동	단독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공동)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임차비	3억원	소요비용의 80%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			
				1인당 월 138만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
-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설치공사 지원,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45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사업내용(새일센터)

구분		내용	사업 수행
고용 노동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여성 가족부	인턴연계	인턴 1인당 460만원 한도 지원 (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취·창업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 신청절차

-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 1544-1199)

46 ▶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

한국폴리텍대학(☎032-650-6780),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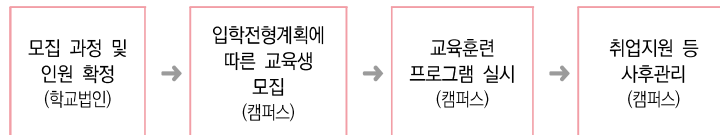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여성 고용률 제고

■ 사업내용

- 운영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대상: 경력단절 여성 등 15세 이상 여성 미취업자 1,700명
- 훈련기간: 3개월
- 훈련과정: '25년 서울정수 등 36개 캠퍼스에서 코딩지도사, AI크리에이터, 공예 등 여성친화직종 85개 과정 운영
- 수료요건: 총 훈련 일수의 80% 이상 이수

■ 사업추진체계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

通

47 고용허가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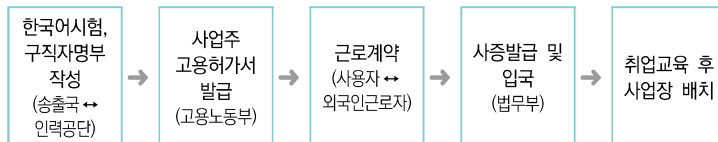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제조업(법인 기준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농·축산업, 임업, 광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 * 다만, 뿌리산업(300인 이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인 경우 고용허가제 적용
 - ** 한식·외국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등(항후 변경 가능)
-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 허용 업종: 제조업(법인 기준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임업, 광업, 서비스업(허용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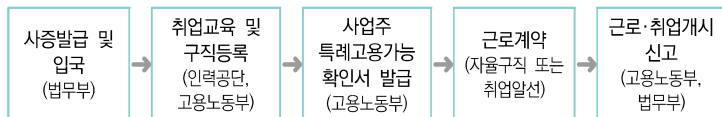
* 다만, 뿌리산업(300인 이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인 경우 고용허가제 적용

< H-2 허용제외 업종 >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50	수상 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48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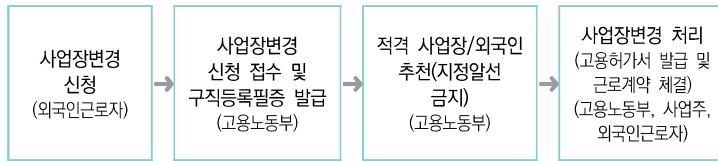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보호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 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 사업장변경 방식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최초 고용허가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 사업장 알선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다만, 외국인근로자 희망하는 경우 수도권역에서 비수도권역 소재 사업장으로 이동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간 알선이 없는 경우 타 비수도권역으로 알선 가능

■ 사업추진체계



- (외국인근로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49 ▶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일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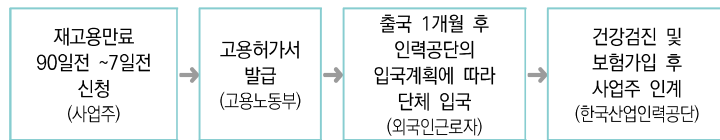
-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 ①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에 해당할 것

〈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 〉

-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 ②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③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④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E-9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 ③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광업
 - ④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주요혜택)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1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

■ 사업추진절차



50 ▶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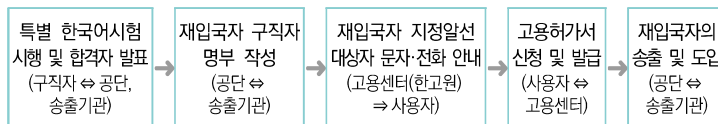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재고용만으로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내용

- (요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 (입국)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지정알선)
 - *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 가능

■ 사업추진체계



51 ▶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사업목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외국인력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상담센터(콜센터, ☎1577-0071) 설치·운영
-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와 갈등, 일상생활 고충,
언어소통문제 등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
통역 지원
-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지원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및 국가별 커뮤니티 현장
지원 서비스 지원
- (사업주 교육)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교육 실시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전 지방관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지원방안 등 협의
*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으로 구성

52 ▶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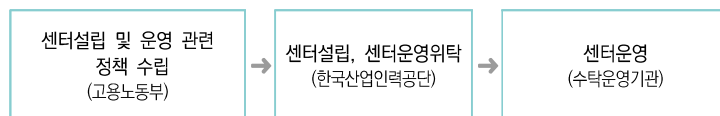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베크,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 사업추진체계



※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53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 사업목적

- 지역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상담·교육 및 지역별 특화 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언어 소통 지원
 - 문화체험·무료진료 등 지역별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

■ 현황

연번	지역	주소	연락처
1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지하1층	051-868-7606
2	대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3, 8층	053-654-9700
3	인천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20, 11층	032-231-4546
4	광주	광주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82	1644-3828
5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5로21, 4층	041-622-7955
6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6층	063-280-6180
7	경남(김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1층	1800-5048
8	경남(양산)	경남 김해시 가락로 81, 6층	055-724-2725
9	경남(창원)	경남 양산시 연호로 28	055-912-0255